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23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4. 4.

서울특별시의회

우형찬 의원 (더불어민주당, 양천3)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」에
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,

최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업 중단, 학교 밖 청소년이

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

실질적으로 학업 중단에 비해

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규모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

현 실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

□ 이에 작년 1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

‘학업 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’에 제시된

학교 밖 청소년 지원, 협업, 데이터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,

본 조례에서 교육감 외 학교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,

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

구축하는 등의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 
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 
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 
교육, 직업체험 및 훈련, 상담 및 자립 등의  
지원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4조의 경우,  
기존 교육감 외 학교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,  
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 
학교장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, 안 제13조의 신설을 통해,  
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 
서울특별시, 유관기관 및 지원기관 등  
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 
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 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 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